회원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사단법인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(이하 '지부'라 한다) 정관 제6조 4항에 따라 회원의 종류·자격, 가입·탈퇴, 권리·의무 및 자격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회원자격 및 구분) ① 회원은 다음 각 호로 구분된다.

- 1. 연회비를 납부하는 운영회원
- 2. 정기적으로 재정적 기여를 하는 후원회원
-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.
- 1. 운영회원의 자격은 연회비 납부일로부터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이다. 다만, 다음 연도 연회비 납부시까지 총회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제한된다.
- 2. 후원회원의 자격은 첫 정기 기부금 납부 시부터 탈퇴 처리완료 시점까지이다.

제3조(가입)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기존 정기 후원회원이 운영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운영회원가입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수 있다.
- ③ 운영회원은 개인회원을 말하며 단체 또는 법인은 가입할 수 없고, 후원회원은 개인, 단체, 법인이 가입할 수 있다.
- ④ 지부는 기업관계정책 등 국제앰네스티 정책 기준에 따라 후원회원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, 제한하거나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조(적용범위) 운영회원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후원회원에 대하여는 제2조와 제3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연회비) ① 연회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결정하여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아동·청소년 등의 운영회원을 위해 다른 연회비를 책정할 수 있다.

③ 특별한 사정이 있는 운영회원은 회비의 납부유예, 감면 또는 면제를 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운영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.

제6조(임의탈퇴) ① 운영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서면이나 구두로 회원탈퇴를 지부에 신청하여야 한다.

- ② 운영회원자격은 회원탈퇴 신청이 접수된 시점부터 상실된다.
- ③ 운영회원 탈퇴 시 연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
제7조(자격상실) 운영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
- 1. 연회비 납부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- 2. 정관 제9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명된 경우

제8조(운영회원의 권리) ① 운영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정관 제7조에서 정한 권리
- 2. 이사회 및 총회 회의자료·회의록, 국제정책문서 등을 요청할 권리
- 3. 그룹을 구성하여 회원들과 함께 활동할 권리
- 4. 기타 규정에서 보장하는 권리
- ② 지부의 사무처 직원인 운영회원은 피선거권이 제한되며, 퇴사 후 2년 간 운영회원이 선출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.

제9조(운영회원의 의무) 운영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정관 제8조에서 정한 의무
- 2. 기타 규정 등에서 규정한 의무

제10조(정책 및 활동원칙 준수) ① 운영회원은 국제앰네스티와 지부의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② 운영회원은 활동에 있어 다음 각호의 활동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1. 운영회원은 정치적 불편부당성과 독립성을 확고하게 견지하여야 한다.

- 2. 운영회원은 금전적, 물질적 지원을 포함하여 기업 등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국제앰네스티의 정책에 따른다.
- 3. 운영회원이 지부를 대변하여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하거나, 지부 이름으로 행사를 진행 또는 참여하거나, 타 단체와 연대하여 활동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지부 사무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4. 운영회원은 국제앰네스티의 명칭과 로고를 사용할 경우 사무처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1조(운영회원활동조직) ① 운영회원은 그룹을 결성할 수 있다.

② 그룹의 구성,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2조(포상) ① 지부의 운영과 활동에 크게 기여한 운영회원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포상할 수 있다.

② 포상의 시기와 구체적인 수준이나 방법은 이사회가 결정한다.

제13조(징계) ① 징계할 수 있는 운영회원의 행위는 정관 제9조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,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한다.

- 1. 지부의 허가 없이 문서·장부·경영상의 비밀 등을 무단으로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열람•대여 또는 사용하게 한 때
- 2. 지부의 시설 또는 물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(私用)한 때
- 3.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고의 또는 이유 없이 즉시 처리하여야 할 문서를 보류·방치·은폐 및 폐기하여 지부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때
- 4. 지부의 활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칙에 준한 비위 사실이 인정된 때
- 5. 정관 제9조 3항 1호와 4호에 준한 비위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때
-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경고: 위반사항이 경미하여 반성하게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한다.
- 2. 자격정지: 정지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, 의결권,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. 자격정지의 기간은 운영회원경력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- 3. 제명: 제명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, 징계기간이 끝나더라도 운영회원자격이 복구되지 않으며, 운영회원

활동을 원할 경우에는 신입회원으로 다시 가입해야 한다. 징계 이전의 운영회원경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.

- 4. 영구제명: 운영회원의 신분을 박탈하며 다시 운영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.
- ③ 징계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- 1. 이사장은 운영회원이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접수 또는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2. 이사회는 운영회원에 대한 비위 사실여부 및 징계해당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야 한다.
- 3. 이사회는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,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, 징계혐의 사실, 징계적용 조항 등을 징계대상자에게 적어도 징계위원회 개최 5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4. 징계대상자는 출석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. 다만, 징계대상자가 전단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명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.
- 5. 징계대상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참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,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- 6.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한 때에는 징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을 통하여 이사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하여 그 결과를 재심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.
- 7. 징계가 결정되면 이사회는 징계 사실을 해당 운영회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. 징계의 효력은 통보도달 시점부터 발효된다.
- 8. 제 2항 1호와 2호의 경우,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9. 제 2항 3호와 4호의 경우, 이사회에서 제명안건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운영회원자 격은 총회 의결 시점까지 중지되며, 총회에서 의결한다.
- **제14조(운영회원상호간 분쟁조정)** ① 이사회는 운영회원 상호간의 분쟁에 대해 조정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- ② 조사 및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5조(운영회원증명서 발급) 운영회원이 운영회원증명을 요청할 경우 지부는 연회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. 그 밖의 운영회원활동과 관련한 사항은 확인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회원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) 2013.12.31 기준으로 정회원인자는 2016.12.31까지는 6개월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연회비를 납부하면 정회원이 된다.

부칙 <2015년 3월 21일>

이 규정은 201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